

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포상규정

2000. 10. 20. 제 정

2003. 04. 21. 개 정

2005. 05. 21. 개 정

2006. 10. 20. 개 정

2016. 09. 01. 개 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본 학회의 정관 제3조에 의거하여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.

제2장 포상 구분 및 포상위원회의 구성

제2조 (구분) 포상은 공로상, 학회 우수논문상,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(과총) 우수논문상, 기타 포상으로 구분한다.

제3조 (구성)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포상위원회를 둔다.

- ① 포상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를 따른다.
- ② 포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으로 하고 위원은 편집위원장과 사무총장, 직전 편집위원장, 직전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
제3장 포상대상자의 선정

제4조 (공로상) 공로상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중에서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
제5조 (학회 우수논문상) 학회 우수논문상은 3년 이상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, 심사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본 학회지에 우수논문을 게재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에서 2인을 편집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포상위원회에서 1인을 선정한다.

제6조 (과총 우수논문상) 과총 우수논문상 후보자는 3년 이상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, 심사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본 학회지에 우수논문을 게재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에서 3인을 편집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포상위원회에서 1인을 선정한다.

제7조 (기타 포상) 기타 포상은 학회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에게 실시하며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
제4장 시상

제8조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 시에 학회장이 수여한다.

제9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, 포상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5장 부칙

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인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